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18가단52092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민정,오범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든

변론 종결 2021. 2. 18

판결 선고 2021.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1)에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6. 체결한 매매 계약을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접수 제151288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7. D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 소유 명의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 8.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부동산은 D이 C앞으로 양자간명의 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C앞 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명의 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이 사건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 인 D의 소유로서 그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피하 기 위하여 수탁자인 C과 합의하여 C명의로 피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매 도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 다.이에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러한 사해 행위의 취소및 원상회복을구한다.

3. 판 단

부동산실 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 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 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 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당사자가 되어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 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 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판결).

이러한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피고는 D이 아닌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에 있어 C은 그저 형식상의 매도인에 불과하고 D이 실질적인 매매 당사자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도

별지

1)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실질적 당사자인 D이 C 명의로 피고와 한 2018. 8. 16.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취소한다는 것인바,그에 맞추어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중 'C과 피고 사이'를 'D과 피고 사이'로 선택한다.